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8일, 박민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2.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6.3.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3.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
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민규의원)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5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제328조제9호 중 “제255조의5”를 “제25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 업체의 공인 <u>취소</u>) (생 략)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 업체의 공인 <u>취소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 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 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	제328조(청문)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제255조의5</u> 에 따른 수출입안 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9. <u>제255조의5제1항</u> -----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